

육아
휴직급여

대체인력
지원금

일과 가정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행복한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출산
전·후 휴가

유연근무
장려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



더 많은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알아보기

[인터넷]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worklife.kr



우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신청하기

사전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 대상 기업에 연락을 드려요!

(주)아이알씨 / T.02-6279-1924

일생활균형
인프라구축지원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사업주 지원

1 임신 · 출산 · 육아 지원

사업명	내용		소관 부처
가족돌봄 휴직	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무급)을 신청하는 근로자	고용 노동부
	내용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간 최대 90일, 분할사용 가능(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 해마다 반복사용도 가능	
	별칙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청방법	- 사용희망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관련 내용 기재하여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요청 *대상가족 성명, 생년월일, 돌봄 사유, 휴직개시예정일 및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가족돌봄 휴가	대상	- 가족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무급)를 신청하는 근로자. -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고용 노동부
	내용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 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22조제4항 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최대 20일 (한부모근로자는 25일) - 자녀 양육으로 사용가능한 경우: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방학 또는 학교의 휴교에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 개별적인 봉사, 체험, 탐방 등 학교 밖의 활동이나 여행, 시험 동행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단,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별칙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청방법	- 사용희망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관련 내용 기재하여 휴가 사용전 (휴가사용일 포함)까지 요청 * 휴가사용일, 대상가족 성명·생년월일, 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등	

사업명	내용		소관 부처															
가족 돌봄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대상	-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근로자	고용 노동부															
	내용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 -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학업 사유 제외) - 단축기간이 끝난 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함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요건에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사용희망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관련 양식 기재하여 근로시간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																
여성 경제활동 지원	대상	- 임신·출산,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구직여성 및 재직여성	여성 가족부 · 고용 노동부															
	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통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십, 취업알선 및 경력단절 예방 등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table><tr><th>구분</th><th>내용</th><th>사업수행</th></tr><tr><td>집단상담 프로그램</td><td>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대상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td><td rowspan="5">159개 새일센터 (여가부·고용부 공동 지정 및 운영지원)</td></tr><tr><td>직업교육 훈련</td><td>각 새일센터에서 5~6개 직업훈련과정 운영</td></tr><tr><td>인턴십</td><td>인턴십 지원 및 지원금 지급 *380만원(기업 320, 인턴 60)</td></tr><tr><td>취·창업 지원</td><td>취·창업 동아리 운영, 컨설팅 지원</td></tr><tr><td>경력단절 예방지원</td><td>경력단절 예방 특강, 취업자 직장적응 교육, 노무상담 및 고충상담</td></tr></table>		구분	내용	사업수행	집단상담 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대상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159개 새일센터 (여가부·고용부 공동 지정 및 운영지원)	직업교육 훈련	각 새일센터에서 5~6개 직업훈련과정 운영	인턴십	인턴십 지원 및 지원금 지급 *380만원(기업 320, 인턴 60)	취·창업 지원	취·창업 동아리 운영, 컨설팅 지원	경력단절 예방지원	경력단절 예방 특강, 취업자 직장적응 교육, 노무상담 및 고충상담	
		구분		내용	사업수행													
		집단상담 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대상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159개 새일센터 (여가부·고용부 공동 지정 및 운영지원)													
		직업교육 훈련		각 새일센터에서 5~6개 직업훈련과정 운영														
		인턴십		인턴십 지원 및 지원금 지급 *380만원(기업 320, 인턴 60)														
취·창업 지원	취·창업 동아리 운영, 컨설팅 지원																	
경력단절 예방지원	경력단절 예방 특강, 취업자 직장적응 교육, 노무상담 및 고충상담																	
신청방법	- (구직여성, 재직여성, 기업) 가까운 새일센터 상담 * 대표전화 1544-1199, 온라인 saeil.mogef.go.kr																	



2 기타 유연근무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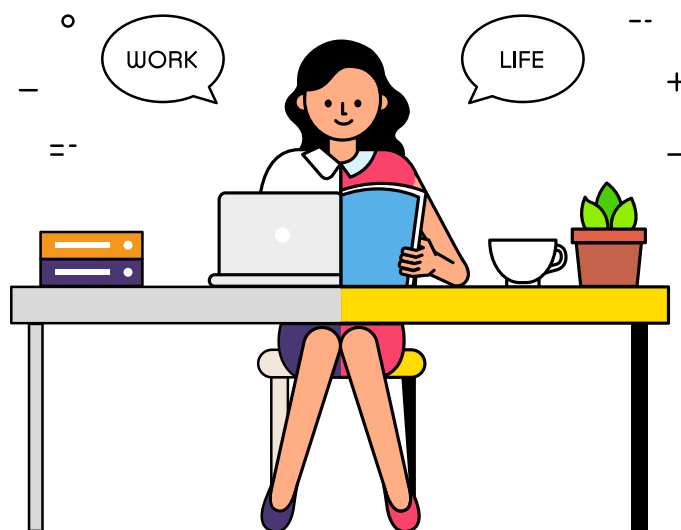
사업명	내용		소관 부처
육아휴직 지원금	대상	- 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 - ② 육아휴직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내용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지원단가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월200만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2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조건 ① 총족 시 상기 금액의 50% 3개월 단위로 지급 ② 총족 시 나머지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상	- 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이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고용 노동부
	내용	-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	
	지원단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지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40만원) - *1호~3호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사례까지 회차별 지원액에 월10만원 추가 지원 - 지원대상 조건 ① 총족 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② 총족 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신청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 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	
	내용	-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단가	- 단축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24.7.1. 시행 예정)	

사업명	내용		소관 부처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	- ①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②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	고용 노동부
	내용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대한 대체인력 비용 지원	
	지원단가	-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80만원(인수인계 기간 최대 2개월, 월120만원) ※ 사업주가 대체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대상 조건 ① 충족 시 상기 금액의 50%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② 충족 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신청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사업명	내용				소관 부처	
인재채움 뱅크	대상	- 대체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및 구직자				고용 노동부
	내용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구분	관할지역	연락처	주소	
		커리어넷	서울,경기	1577-0221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3, 2층	
		제니엘	경기	031-778-881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65,3층	
		스카우트	전라,경상	1577-8505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7층	
		동래 · 창원 · 울산 여성인력개발	경상	051-503-8944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126번길 5	
		지에스씨넷	강원 · 충청	044-864-1490	세종시 한누리대로 219, 4층	
신청방법	- 인재채움뱅크 누리집에 구인 · 구직 등록 또는 지역별 관할 인재채움뱅크에 유선연락(연중 신청 가능)					

고용
노동부



사업명	내용				소관 부처
유연근무 장려금	대상	- 유연근무(시차출퇴근, 선택·재택·원격근무)를 소속근로자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고용 노동부
		선택 근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업·종업 시각 및 1일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		
		원격 근무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시차 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 육아기(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내용	-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 지원			
지원단가	-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육아기 특별지원	
	재택·원격	15만원 (월 6~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10만원 상향 지원	
	시차	10만원 (월 6~11일 활용)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지원	
	선택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10만원 상향 지원	
	- (지원 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소수점 이하 버림,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				
신청방법	- 신청시기: 연중 (최초 제도활용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신청 및 지급)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사업명	내용			소관 부처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대상	- 유연근무 활용을 위해 정보보안 · 근태관리 시스템 등을 설치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 사업주			고용 노동부
	내용	-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 지원 대상 시설]			
		종류	지원시스템 예시	지원방식	
		① 유연 근무	▶ 근태관리 시스템 - 그룹웨어, ERP, 출 · 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 기업 전용 이메일 · 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직접지원 (설치비 또는 사용료)	
		② 재택 · 원격근무	▶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지원단가	- ① 재택 · 원격근무 위한 정보보안 ·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 50%(최대 2천만원) - ② 유연근무(재택 · 원격 · 시차 · 선택) 위한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 70%(최대 750만원) ※재택 · 원격의 경우 ①(정보보안, 근태관리) 또는 ②(근태관리) 유형 중 선택 가능 ※'24년부터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인프라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신청시기: 연중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유연근무 종합컨설팅	지원대상	- 유연근무를 도입 · 활용하고자 하나 방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고용 노동부
	내용	- 적합 직무 발굴 및 설계, 조직문화 변화 관리 등 제도 정착 지원, 유연근무 관련 법적 쟁점 등 인사 · 노무관리체계 구축, IT 인프라 구축 등 전문 컨설팅			
	지원단가	- 무료			
	신청방법	- 신청시기: 4~8월 - 이메일 접수(suwon@korea.kr)			



사업명	내용		소관 부처	
위라벨 일자리 장려금	소정 근로 시간 단축 지원		고용 노동부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근로시간 단축 전 6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① 취업 규칙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② 근로자 신청으로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허용 ③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④ 근태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초과 또는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내용	장려금, 임금감소액 보전금(요건 해당시)을 최대 1년간 지원		
	지원단가	지원수준(단축근로자 1인당)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에서 월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		월 최대 20만원
		-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		
	신청방법	- 신청시기: 연중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3개월 주기로 신청·지급)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실근로 시간 단축 지원			
	지원대상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우선지원대상,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		
내용	- 장려금을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지원단가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 - 지원한도: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 (최대 100명,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신청방법	- 신청시기: 연중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3개월 주기로 신청·지급)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